

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2차 본 회의(2016.11.7.)

# 조례·출연안 심사 보고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**의안번호**

# **목 차**

2016-67	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-----	1
2016-68	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	3
2016-69	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-----	5
2016-76	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-----	7
2016-77	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-----	9

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0. 17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## 2. 제정이유

-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 용어 정함(안 제1조·제2조)

나.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사항 규정(안 제3조)

- 지원계획의 세부사항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

다. 이차보전 등 지원 및 제외 대상 규정(안 제4조)

- 지원: 창업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
- 제외: 주점업, 금융업, 골프장 및 사치·향락업종 등

라.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 규정(안 제5조)

- 창업자금: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연 2.5퍼센트 이자
- 경영안정자금: 2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연 2.5퍼센트 이자
- 신용보증 수수료: 50퍼센트 이내

마. 착한가게 특례 지원 사항 규정(안 제6조)

-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연 3.0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등

바. 이차보전 지원 절차 규정(안 제7조)

사.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사항 규정(안 제8조)

○ 금융기관 선정: 이차보전 자금 취급 업무

○ 금융기관 협약 체결: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

아. 지원중지 및 환수 사항 규정(안 제9조)

○ 사업장 휴·폐업, 관외지역 이전, 허위자료 제출, 목적 외 사용 등

자.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○ 필요시 가계운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자료 요구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요지**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,

○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0. 17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## 2. 개정이유

- 「소하천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, 반환기준, 변상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점용료 등의 조정 사항 개정(안 제4조)

- 현행: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
- 개정: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

### 나. 분할납부 대상 및 방법 개정(안 제5조)

- 현행: 채취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
- 개정: 채취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, 납부액이 50만원 초과

### 다. 반환기준 개정(안 제7조)

- “반환하지 아니 한다” 는 부정적 의미 삭제

- 감면의 경우에도 반환을 의무규정으로 개정
- 반환은 허가취소 등을 한 다음 날부터 계산
- 라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변상금 신설(안 제10조)
  - 부당이득금 → 변상금
  - 변상금: 무단 점용·사용한 기간의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 금액 부과
- 마. 감면기준 추가(안 별표 2)
  - 국민경제와 밀접한 중대한 공익사업: 50퍼센트 감면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소하천정비법」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점용료의 분할납부 대상·방법, 반환기준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0. 17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## 2. 개정이유

- 관내에서 생산·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 용어 정함(안 제1조·제2조)

나.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·제4조)

-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계획 수립·시행 등
-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·공급

다. 해외통상자문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 ~ 제7조)

- 기능: 해외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
- 대상: 상공인, 국제교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지원: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

라.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- 무역사절단 파견, 박람회 참가, 마케팅 등 필요경비 지원

마.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-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전문단지, 조직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

바.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-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, 생산관리 교육, 컨설팅 지원 등

사. 수출 우수기관의 시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)

아. 보조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
- 「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」 별표의 기준에 따름

(지원율: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0~100%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·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수출품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[ **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** ]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0. 17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## 2. 제안이유

-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## 3. 출연개요

- 가. 출연근거: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
- 나. 출연대상: 경남신용보증재단(이사장 이광시)
- 다. 사 업 비: 군비 100백만원(2017 요구액)
- 라. 사업내용: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등 지원

## 4. 부서의견

-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하여,
-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.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경남신용보증재단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,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,
-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1.5%, 경남도 34.5%, 지방자치단체 1.9%, 금융기관 35.1%, 기업체 4.9%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·군의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,
- 현재 경남 전체 18개 시·군 중 15개 시·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우리군도 2015년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,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,
- 향후 경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시 출연비중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 등 인센티브 차등화가 검토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(안)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7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8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10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0. 17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## 2. 제안이유

-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.

## 3. 출연개요

- 가. 출연근거: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(재산조성 및 운영경비)
- 나. 출연대상: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(이사장 양동인)
- 다. 사 업 비: 군비 200백만원(2017 요구액)
- 라. 사업내용: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경비 등 지원

## 4. 부서의견

-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.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, 연구원 2명,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연구센터 운영비로 매년 2억원을 지원받고 있음.
- 연구센터는 무분별한 중국산 석재 수입 및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
- 특히,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과 채석경제성 평가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전체 운영예산의 50%를 충당하고 있음.
- 향후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와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(안)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7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8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10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